

## 영남대학교의료원 전공의 보수규정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17. 12. 20.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18. 8. 22.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1. 2. 3.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2. 4. 20.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2. 6. 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남대학교 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직원보수규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원 전공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의료원 전공의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공의”라 함은 의료원 직원인사규정에서 정한 레지던트 직렬과 인턴 직렬을 말한다.
2. “보수”라 함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 가. 통상임금
  - 나. 효도휴가비
  - 다. 법정수당
  - 라. 기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
  - 마. 의료원장이 경영상황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
  - 바. 기타 의료원장이 임시로 지급하는 수당 등(특별상여금, 격려금 등)
3. “통상임금”이라 함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임금을 말한다.
  - 가. 봉급 : 재직경력기간 등에 따라 지급되는 본봉
  - 나. 면허수당
  - 다. 기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4.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제4조(지급일) 임금은 매월 15일에 지급한다. 다만 휴일이거나 특별한 행사 관계로 정 일 지급이 곤란할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계산방법) 임금계산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계산기준) ① “통상임금”은 그 달의 근무일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기타 금품은 의료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 또는 휴직된 달의 평균임금 전액을 지급한다.

1. 업무상 상병 또는 사망으로 퇴직하는 경우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제7조(봉급) 전공의 봉급은 별표1과 같이 구분하며, 봉급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의료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1. 전공의 외 직원 임금인상률
2. 유사규모 타 대학병원 전공의 임금 수준
3. 의료원 제반 경영상황

제8조(휴직 기간 중의 임금) ① 질병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자에게는 휴직 기간 중 평균임금의 5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평균임금의 8할을 지급한다.

- ② 직무상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한 휴직을 할 경우 평균임금 전액을 지급한다.
- ③ 육아휴직자에게는 휴직기간 중 단체협약에서 정한 육아휴직수당만을 지급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병가 기간 중의 임금) 병가 기간 중의 임금은 평균임금의 8할을 지급한다.

제10조(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임금)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임금은 평균임금 전액을 지급한다.

제11조(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자의 임금) ①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와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직위해제일로 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5할을 지급한다.

- ② 정직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평균임금의 3분의 1에 해당액을 지급한다.
- ③ 감봉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12조(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전공의가 연장, 야간, 휴일 근무를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제13조(면허수당) 전공의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임금지급일에 별표2에 의하여 면허수당을 지급한다.

제14조(효도휴가비) ① 전공의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3에 의하여 효도휴가비를 지급한다.

- ② 효도휴가비는 추석과 익년 설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전공의에게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③ 효도휴가비는 지급기준일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이 임금지급일 이전인 경우에는 전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의2(가족행복수당) ① 전공의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4에 의하여 가족행복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21. 2. 3.>

② 가족행복수당은 5월의 보수지급일 현재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전공의에게 지급한다. <신설 2021. 2. 3.>

③ 가족행복수당은 지급월의 봉급지급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1. 2. 3.>

제14조의3(교통지원금) ① 전공의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5에 의하여 교통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설 2022. 4. 20.>

② 교통지원금은 8월과 익년 2월의 보수지급일 현재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전공의에게 지급한다. <신설 2022. 4. 20.>

③ 교통지원금은 지급월의 봉급지급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2. 4. 20.>

제15조(기타 제수당) ① 의료원장은 전공의의 업무 특수성, 중요성, 진료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료활동 및 특별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2.>

② 의료원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 규정이 정하는 외의 한시적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당 및 경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8. 22.>, <개정 2022. 6. 15.>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수당의 지급목적, 지급대상자, 지급기간 및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수당 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8. 8. 22.>

부칙(2017.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8. 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전에 지급한 기타수당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1. 2. 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4. 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6. 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공의 봉급표

구 분	금 액	비 고
인턴		
레지던트 1년차		
레지던트 2년차		
레지던트 3년차		
레지던트 4년차		

(별표 2)

면허수당 지급표

구 분	월 지급액
전공의	

(별표 3)

효도휴가비 지급표

구 분	지급액
전공의	

(별표 4)

가족행복수당 지급표

구 분	지급액	지급월
전공의		

(별표 5) <신설 2022. 4. 20.>

교통지원금

구 분	지급액	비 고
전공의		